



디지털경제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2016.09



CONTENTS

01. 도입 배경	1
02. 주요 권고사항	2
03. 국내 입법동향	4
1. 재화수입 시 VAT과세	4
2. 전자서비스 및 무형자산 수입 시 VAT과세	4
04. 해외 입법동향	6
1. 북미	6
2. 유럽	6
3. 아시아/오세아니아	7
4. 기타	8
5. 요약	9
05. 요약 및 시사점	10
 참고문헌	 13

01 도입 배경

■ 디지털경제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조세제도 하에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함

- 디지털거래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없이 원거리에서도 영업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는 현행 조세제도하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 온라인을 통해 영화·음악·전자책과 같은 전자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 판매자가 판매하는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반면 외국판매자가 판매하는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다국적기업이 국가 간 조세규정 차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조세회피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은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문제를 확대시킴

-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으로 사업기능 및 무형자산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이며, 이러한 특징은 저세율국에 주요 사업기능을 집중하여 소득을 인위적으로 이전시키거나, 무형자산을 이전하여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 소득 원천지국에서의 과세회피를 용이하게 함

■ OECD는 다국적기업의 BEPS문제를 해결하고자 15개의 BEPS Action Plan을 발표하였으며,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 및 대응방안은 Action 1¹⁾에서 제시하고 있음

- Action 1은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하는 주요 조세문제 및 대응방안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
- 디지털경제에서의 BEPS문제는 고정사업장 문제를 다룬 Action 7, CFC소득 과세문제를 다룬 Action 3 등과 같은 다른 Action 플랜의 이행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1)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5.

02 주요 권고사항

■ Action 1에서는 디지털경제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함

- 법인세 부과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물리적 장소가 아닌 새로운 연계거점으로 고정사업장을 판단하고, 예비적·보조적 활동이어도 주요 사업활동인 경우 해당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며, 디지털거래에 원천세 부과 또는 균등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함
- 부가가치세 부과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소액 수입물품의 VAT 면세점 인하 및 각 국가별로 적합한 VAT 징수모델 적용, 외국 판매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비스의 경우 소비지국에서 VAT를 과세하고 납부할 것을 제시함

■ 디지털거래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해당 국가에 물리적 장소가 없더라도 아래와 같은 새로운 연계거점으로 고정사업장을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함
 - 수익기반 : 기업의 플랫폼을 통해 해당 국가 고객과 체결한 거래의 수익
 - 디지털요소 기반 : 도메인이름이 속하는 국가, 디지털플랫폼 설치 국가, 결제시스템 설치 국가와 같은 디지털요소에 따라 연계거점 결정
 - 사용자 기여도 기반 : 디지털플랫폼에 접속한 사용자 수,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고객과 체결한 계약 수, 수집된 데이터의 양으로 연계거점 결정
- 둘째,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더라도 해당 활동이 사업의 주요 활동인 경우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함
- 셋째, 새로운 과세방법으로 디지털거래에 원천세를 부과함
 - B2B거래 시 국내사업자가 외국판매자에게 디지털거래 관련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대신 납부함
 - B2C거래 시 대리인을 선임하여 다수의 개인소비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함
- 넷째, 디지털거래에 새로운 형태의 균등부과금을 부과함
 - 균등부과금은 개별소비세의 형태로 외국판매자에게 대금지급 시 일정 세율만큼 과세하는 방식임

- 디지털거래에서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기 위한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VAT가 부과되지 않는 소매물품의 면세점을 낮추고, VAT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국내정책 및 상황에 맞는 VAT 징수모델을 적용함
 - VAT 징수모델로 세관징수모델, 판매자징수모델, 구매자징수모델, 중개인징수모델이 있음
 - 둘째, 외국 판매자가 전자서비스 및 무형자산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 거주국에서 VAT를 과세하며, 외국판매자가 소비지국에 VAT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간편 VAT사업자 등록제도’를 운영함

- Action 1의 법인세 권고사항 중 고정사업장 예외규정 수정을 제외한 연계거점을 활용한 고정사업장 판단, 원천세 부과, 균등부과금 부과방안은 현재 단계에서 도입을 제안하지 않음

03 국내 입법동향²⁾

1 재화수입 시 VAT과세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은 VAT도 면세하며³⁾, 수입물품에 대한 VAT는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자가 VAT도 함께 신고·납부하는 ‘세관징수모델’을 운용하고 있음⁴⁾
 -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⁵⁾

2 전자서비스 및 무형자산 수입 시 VAT과세

- 2014년 2월 23일 외국판매자가 전자서비스 및 무형자산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소비지국에서 과세하고, 소비지국에 VAT 사업자로 등록하여 VAT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⁶⁾
 - 소비지국에 VAT사업자 등록 및 납부해야 하는 외국판매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을 말함
 - 단, 오픈마켓 또는 중개인을 통해 전자서비스 및 무형자산을 제공하는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 또는 중개인이 VAT사업자 등록 및 납부 의무를 가짐
 - VAT를 과세하는 전자서비스 및 무형자산은 핸드폰,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게임, 음악, 소프트웨어, 동영상, 전자문서임⁷⁾
 -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됨

2) OECD는 법인세 권고사항 중 고정사업장 예외규정 수정은 Action 7의 이행을 통해 해결될 예정이며, 연계거점을 활용한 고정사업장 판단, 원천세 부과, 균등부과금 부과는 현 단계에서 도입을 권고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관련하여 입법된 내용이 없으므로 본 챕터에서 OECD의 법인세 권고사항 내용은 제외함

3)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6항

4) 부가가치세법 제50조

5)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6)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서비스 및 무형자산을 제공하는 외국판매자, 오픈마켓 운영자 및 중개인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에 ‘간편 VAT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한 내에 VAT를 신고·납부해야 함

- 간편 VAT사업자 등록 방법: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의 사항을 입력함
 - 사업자·대표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웹사이트 주소 등의 연락처
 - 전자서비스를 판매하는 외국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 제공하는 전자서비스 종류, 국내 사업 개시일, 납세관리인 정보
- 신고방법: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신고기한은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한과 동일함
 -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한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임
- 납부방법: 납부기한 내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함

04 해외 입법동향

- 해외 입법동향은 Action 1의 부가가치세 관련 권고사항 중 ‘전자서비스 및 무형자산의 국제 거래 시 소비지국 과세제도’를 도입한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함
 - 법인세 권고사항 중 고정사업장 예외규정 수정은 Action 7을 통해 해결될 것이며, 나머지 권고사항은 현재 단계에서 도입을 권장하지 않고 있음
 - 부가가치세 권고사항 중 소액물품의 VAT 면세점 인하 및 징수모델 선택은 각 국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특별한 해외동향이 발견되지 않아 현재 주요국의 VAT 면세점만 <부표 1>에 제시함

1 북미

- 캐나다는 외국 판매자로부터 전자서비스를 제공받은 소비자가 VAT를 대리납부 하는 제도 (self assessment)를 1991년에 입법하였으나⁸⁾,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아 효율적 징수를 위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개정된 사항은 없음⁹⁾

2 유럽

- EU는 2015년 1월부터 외국거주 판매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비스는 모두 소비지국에서 VAT를 과세하도록 ‘EU 부가세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외국판매자의 납세행정 부담을 간소화하기 위한 간편등록제도(One Stop Service)를 운영 중임¹⁰⁾
 - 개정 이전에는 EU회원국 간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급자 거주국에서 VAT를

8) 캐나다 국세청(<http://www.cra-arc.gc.ca/E/pub/gm/g300-9/g300-9-e.html>), 2016.07.26. 접속.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9) EY,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16*, 2016.04, p.145.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0) 유럽연합(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taxation/vat/how_vat_works/telecom/index_en.htm), 접속일자 2016.08.08., 유럽연합, “Guide to the VAT mini One Stop Shop,” 2013.10.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EU회원국 간에도 소비자 거주국에서 VAT를 과세하도록 개정함
- 간편등록제도(OSS)는 EU회원국 중 한 국가에서 VAT 사업자 등록 및 납부를 허용하는 것으로 외국판매자의 납세행정 부담이 적음

■ 노르웨이는 2011년 7월 1일부터 외국 판매자가 노르웨이 거주 소비자에게 전자서비스 제공 시, 외국판매자가 노르웨이에 VAT사업자 등록을 하고 VAT를 납부하도록 함¹¹⁾

- VAT를 과세하는 전자서비스는 전자책,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임
- 외국 판매자의 납세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 VAT사업자 등록제도를 운영 중임

■ 스위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외국 판매자가 스위스 소비자에게 전자서비스를 제공 시, 외국판매자가 스위스에 간편 VAT사업자 등록을 하고 VAT를 납부하도록 함¹²⁾

- 외국판매자가 스위스 거주 소비자에게 전자서비스를 판매한 금액이 연간 100,000스위스프랑을 초과하는 경우 VAT사업자 등록 및 납부를 함

3 아시아/오세아니아

■ 일본은 2015년 10월부터 외국 판매자가 일본 소비자에게 전자서비스 및 무형자산 제공 시 일본에 간편 VAT사업자 등록을 하고 VAT를 납부하도록 함¹³⁾

- 기존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거주국에서 VAT를 과세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VAT가 과세되지 않음
- VAT를 과세하는 전자서비스는 전자책, 음악, 광고, 영화,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전자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함
- 외국 판매자가 일본 소비자에 전자서비스 등을 판매한 금액이 연간 1천만엔 이상인 경우, 일본 국세청에 VAT사업자 등록 및 납부를 함
 - 일본 내 연간 매출액이 1천만엔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은 강제사항이 아님

11) EY,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16*, 2016.04, p.728.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2) EY,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16*, 2016.04, p.958.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3) 일본 재무부(http://www.mof.go.jp/english/tax_policy/tax_reform/fy2015/tax2015ct.htm), 접속일자 2016.07.26.; IBFD, "Topical Analyses-Consumption Tax", 접속일자 2016.09.20.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 뉴질랜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외국 판매자가 뉴질랜드 거주 소비자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 시, 외국판매자가 뉴질랜드에 간편 사업자등록을 하고 VAT를 납부하도록 시행함¹⁴⁾
 - 뉴질랜드 소비자에 대한 연간매출액이 60,000뉴질랜드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을 함

- 호주는 2017년 1월부터 외국 판매자가 호주 소비자에게 전자서비스 제공 시, 호주에 간편 VAT¹⁵⁾사업자 등록을 하고 VAT를 납부하도록 함¹⁶⁾
 - 전자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는 영화, 음악, 앱, 게임, 전자책 등을 말함
 - 외국 판매자가 호주 소비자에게 판매한 전자서비스의 연간 매출액이 75,000호주달러 이상인 경우 GST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납세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편사업자 등록제도’를 운영함
 - 간편사업자 등록제도는 외국 판매자가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정보만 등록하고, GST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4 기타

- 남아프리카는 2014년 6월 1일부터 외국 판매자가 남아프리카 거주 소비자에게 전자서비스를 제공 시, 간편 VAT사업자 등록 및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함¹⁷⁾
 - 외국 판매자는 다음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며, 과세대상 용역 매출액이 50,000 랜드(ZAR)를 초과하는 자를 말함
 - 용역을 제공받는 사람이 남아프리카 거주자 또는 거주기업인 경우
 - 용역 제공에 대한 대금이 남아프리카 은행에서 지급되는 경우

- 이스라엘은 OECD권고안 및 EU규정에 따라 외국판매자가 이스라엘 소비자에게 전자서비

14) 뉴질랜드 국세청(<http://www.ird.govt.nz/industry-guidelines/non-res-bus-gst/online-services/non-res-bus-gst-online-services.html>), 2016.07.26. 접속.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5) 호주의 부가가치세는 GST(Goods and Sales Tax)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본 챕터에서는 VAT로 통용함

16) 호주 국세청(<https://www.ato.gov.au/Business/International-tax-for-business/In-detail/Doing-business-in-Australia/New-Australian-law-applying-GST-to-imported-digital-products-and-services/>), 2016.07.26. 접속.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7) EY,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16*, 2016.04, p.918.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스 제공 시 VAT사업자등록을 하고 VAT를 납부하도록 입법을 제안하였으나,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음¹⁸⁾

5 요약

- 각 국가별 Action 1의 권고사항 중 ‘국외에서 전자서비스 제공 시 소비지국 과세 및 간편사업자 등록제도’의 도입현황은 <표 IV-1>에 제시함

표 1 주요국의 Action 1 권고사항 이행현황

국가		구분	시행시기	소비지국 과세	간편 등록 제도 운영
북미	미국	-	-	-	-
	캐나다	입법완료	1991.01.02	○	X ²⁾
유럽	EU회원국 ¹⁾	입법완료	2015.01.01	○	○
	노르웨이	입법완료	2011.07.01	○	○
	스위스	입법완료	2018.01.01	○	○
아시아/ 오세아니아	호주	입법완료	2017.07.01	○	○
	뉴질랜드	입법완료	2016.10.01	○	○
	일본	입법완료	2015.10.01	○	○
	한국	입법완료	2015.07.01	○	○
	중국	-	-	-	-
기타	남아프리카	입법완료	2014.06.01	○	○
	이스라엘	논의 중 (입법제안)	2016.03.13. 발표, 시행시기 미정	○	○

주: 1) EU국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이 포함됨

2) BEPS Action 1의 부가가치세 권고안을 적용한 모든 국가가 외국 판매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캐나다는 소비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함

18) EY(<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Israel-proposes-legislation-to-collect-VAT-on-digital-services-acquired-from-overseas-suppliers>), 2016.03.17.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05 요약 및 시사점

- Action 1은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법인세의 경우 고정사업장 예외규정의 수정, VAT의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전자서비스의 소비지국 과세, 소액물품의 VAT 면세점 인하를 권고함
 - 고정사업장 예외규정의 수정은 Action 7의 이행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됨
 - 법인세 권고사항 중 연계거점을 활용한 새로운 고정사업장 판단기준 도입, 디지털거래에 원천세 부과, 균등부과금 부과도 권고하였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도입을 권장하지 않음
 - 디지털경제에서의 BEPS문제는 다른 액션플랜의 이행을 통해 완화되는 부분이 커 향후 다른 액션의 조치 이후 모니터링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2015년 7월부터 외국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서비스 제공 시 우리나라에서 VAT를 과세하고, 외국 판매자는 국세청에 VAT사업자 등록 및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 외국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인터넷, 전자기기를 통해 영화, 음악, 전자책,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경우 국세청에 VAT사업자 등록을 하고 VAT를 납부해야 함
 - 단, 외국 판매자가 해외 오픈마켓, 중개인을 통해 전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 또는 중개인이 VAT사업자 등록 및 납부의무를 가짐
 - 외국판매자의 납세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 절차를 간소화함

-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OECD국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권고안 중 ‘국외에서 전자서비스 제공 시 소비지국 과세’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 OECD권고안을 도입한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EU국(22개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노르웨이, 스위스이며, 입법논의 중인 국가는 이스라엘임
 - 이 중 캐나다, 노르웨이는 BEPS Action 1 발표 이전 이미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국가 모두 Action 1의 초안 발표 후 권고사항을 적용함
 - 미국, 중국은 국외에서 전자서비스 공급 시 소비지국에서 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Action 1의 권고사항을 도입하지 않음

- Action 1의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서비스를 판매하더라도 VAT가 과세되어 국내·외 개발자 간 과세형평성이 제고됨
 -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VAT사업자 등록을 하고 VAT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행정 의무가 발생하나 사업자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러한 부담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부록 - 'OECD국의 VAT 면세점'

부표 1 OECD국의 VAT 면세점

국가명	화폐단위	VAT 면세점	USD환산 ¹⁾
호주	AUD	1,000	861
오스트리아	EUR	22	28
벨기에	EUR	22	28
캐나다	CAD	20	18
칠레	CLP	0	0
체코	EUR	22	28
덴마크	DKK	80	13
에스토니아	EUR	22	28
핀란드	EUR	22	28
프랑스	EUR	0	0
독일	EUR	22	28
그리스	EUR	22	28
헝가리	EUR	22	28
아이슬란드	EUR	1,500	16
아일랜드	EUR	22	28
이스라엘	USD	75	75
이탈리아	EUR	22	28
일본	JPY	10,000	87
한국	USD	150	150
룩셈부르크	EUR	22	22
멕시코	USD	300	300
네덜란드	EUR	22	28
뉴질랜드	NZD	400	309
노르웨이	NOK	200	29
폴란드	EUR	0	0
포르투갈	EUR	22	28
슬로바키아	EUR	22	28
슬로베니아	EUR	22	28
스페인	EUR	22	28
스웨덴	EUR	22	28
스위스	CHF	62.5/200	65/208
터키	TRY	0	0
영국	GBP	15	24
미국	USD	-	-

주: 1) USD환산금액은 2014년 11월 1일자 환율로 환산한 금액임

자료: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Appendix C.B, 'Low value import relief -Exemption thresholds', p.217, OECD Publishing, Paris, 2015.

참 · 고 · 문 · 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인도 2016-17 예산안 공개’, 2016.04.
_____,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2016.

EY,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16*, 2016.04.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5.

뉴질랜드 국세청, www.ird.govt.nz

삼일인포마인, www.samili.com

영국 국세청, www.gov.uk

일본 재무부, www.mof.go.jp

캐나다 국세청, www.cra-arc.gc.ca

호주 국세청, www.ato.gov.au/

EY, www.ey.com

IBFD, www.ibfd.org

디지털경제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